

202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ESG경영 확산을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하오니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모집 개요

□ 사업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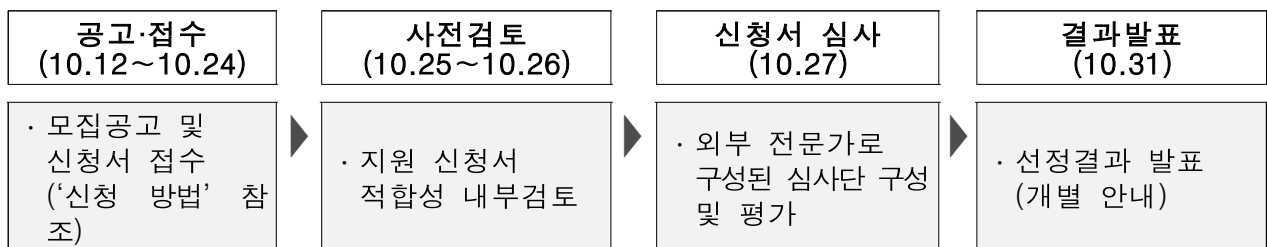
□ 모집규모 : 0개사

※ 모집규모는 기업 참여현황과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집대상 : 국내 보건산업분야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예비)사회적기업 등

□ 모집 및 선정 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기준

구분	내용
사회적 가치	기업의 소셜 미션, 추진사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연계성
지원 필요성	추진사업의 보건산업분야·ESG분야 관련성, 지원 효과성
지속 가능성	기업의 비전, 성장가능성, 보건산업진흥원과의 협업 가능성

※ ESG분야 :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와 관련된 사업

2. 지원 내용

□ 선정기업 대상 사업성장지원금 500만원 지원

※ 지원금 지급방식 및 사용 비목은 지원금 사용지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사업 매칭·연계를 통해 신 판로개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10.12.(목) ~ 10.24.(화) 18:00 이메일 도착분까지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jangjuneun@khidi.or.kr)

※ 이메일 제목은 '(기업명) KHIDI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로 작성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접수 확인 바랍니다.(담당자 : 043-713-8321)

□ 제출서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①~③ 서식 사용

- ① 참가신청서(직인 필수)
- ② 사업계획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④ 사회적경제기업 증명서류(인.지정서 등)
- ⑤ 사업자등록증

⑥ 고용현황('21, '22, '23년) 및 재무현황('21, '22년) 증빙자료

⑦ 기타 기업소개 홍보자료 등

※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부적합 기준에 해당하거나 작성·제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부적합 기준 : ①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경우 ② 추진사업이 보건산업 또는 진흥원과 관련 없는 경우 ③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조정실 ESG경영팀
(043-713-8321)

202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 기업 개요 (사업자등록증 기준) ※ 총 2페이지 이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분야				
사업내용 요약소개 (3줄 이내)				
조직유형	구분	유형		
	<input type="checkbox"/> 인증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제공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공헌형	<input type="checkbox"/> 창의·혁신형
	<input type="checkbox"/>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부처명 :) <input type="checkbox"/> 지역형(지역명 :)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마을기업	<input type="checkbox"/> 자활기업	<input type="checkbox"/> 소셜벤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일(해당시)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태/종목			홈페이지	
사업장 소재지	본점	※지점 또는 공장이 있는 경우 주소 추가기입		
대표자 연락처	대표전화		휴대전화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위/전화	
	이메일 (업무용)		휴대전화	
고용현황 (최근 3년간) <small>*대표 제외, 4대보험 가입근로자 기준</small>	구분	총 유급근로자(A)	취약계층근로자(B)	취약계층 비율(B/A)
	2021			%
	2022			%
	2023(현재)			%
재무현황 (최근 2년간)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천원	천원	천원
	2022	천원	천원	천원

사업계획서 (기업명) ※총 3페이지 이내, 휴먼명조 11포인트 작성

I. 신청기업 현황

기업가 정신

1. 대표자 창업 계기/목적

2. 대표자 경력/경험

기업의 소셜미션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2.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아이템, 추진 중인 사업

3. 추진사업의 성장가능성 및 보건산업 · ESG 분야 관련성

□ 기업의 주요실적(연혁 및 수상경력 등)

※ 기업 홍보책자, 브로슈어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제출

□ 지원 필요사항

II.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업 가능한 사업 분야 및 아이디어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 주요내용 :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법, 실현가능성, 실현을 위한 기관의 역할 등
- 기대효과 : 제안 실행에 따른 기대효과,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 등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하여 진흥원 기 추진사업과 협업 및 연계 가능한 분야, 진흥원과의 신규 협업사업 가능 분야 발굴 등 자유롭게 기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사업 담당 부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신청기업 대표자 및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직위, 이메일	본인확인, 개인식별, 심사평가 및 관리, 지원기업 선정	지원사업 종료 후 3년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지원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2023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서명)

□ 사업성장지원금 사용원칙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기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용도로 선정기업의 책임하에 합리적으로 사용
- 본 지침에서 안내하는 사용비목, 목적 및 주의사항에 따라 사용
- 사업성장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구비·제출
 - 전체 사용내역서,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 및 현금 영수증), 구매내역서, 사용에 따른 결과물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제출
 - ※ 작성 양식 및 방법 차후 안내, 목적 외 사용 및 부적합 사용 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사업성장지원금 사용가능 범위

	비목	정의 및 사용예시	비고
1	인건비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단, 대표 및 대표의 가족 제외)	.4대보험 가입근로자 대상 .1인당 인건비의 50% 이내, 최대 200만원 이내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부,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통해 증빙
2	소모품비	사무 및 전산용품 구입비 예) 문구,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키보드 및 마우스 등	.구매내역을 포함하여 증빙
3	도서구입비	사업추진 및 기업운영 관련 도서 구입 예) 사회적 가치, ESG 관련 도서 등	.도서명이 표기된 영수증 제출
4	교육훈련비	임직원 교육훈련비용 예) 직원 법정교육, 관련 교육 참가비 등	.사업분야 관련 교육 대상
5	홍보비	기업 및 추진사업 홍보를 위한 비용 예) 홍보책자 및 브로슈어 제작, 블로그 및 홈페이지 개선 등	.기업 50% 이상 비용 매칭으로 (자부담)진행, 1건당 최대 200만원 이내
6	재료 및 시설비	사무집기 및 시설 수선유지 비용 예) 사무용의자, 프린터 등 사무집기 대여.구입, 시제품 제작, 시설 보수 및 수리 등	.기업 50% 이상 비용 매칭으로 (자부담)진행 .재료 및 시설비 비목 사용금액 합계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